



WTO/DDA 농업협상 동향과

주류업계의 대응전략



글 | 손영권 주류1팀

본 원고는 WTO/DDA 농업협상의 주요 협상의제인 농업, 비농산물, 규범, 싱가포르이슈,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 분야 중에서 주류산업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농업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trading system)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2001.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 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 출범을 공식선언 하였다. 동 각료회의 전까지 다자무역협상

〈표 1〉 다자무역협상

차수	라운드 명칭	협상연도	참여국가수
1	제네바(Geneva)	1947	23
2	애너시(Annecy)	1949	33
3	토르케이(Torquay)	1950	34
4	제네바(Geneva)	1956	22
5	딜론(Dillon)	1960~61	45
6	케네디(Kennedy)	1962~67	48
7	도쿄(Tokyo)	1973~79	99
8	우루과이(Uruguay)	1986~93	123
9	DDA	2001~현재	148

자료: 최낙균 외(2002), WTO(<http://www.wto.org>)

1. 개요

WTO/DDA 농업협상은 1947년 GATT 설립이후 9번째 다자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이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로는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이다 DDA협상 이전의 라운드는 1986~93년 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이었으며, UR 협상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어 규범중심의 다자무역체제(rule-based multilateral

은 ‘뉴라운드(New Round)’로 불렸으나,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여 ‘개발’이 포함된 DDA로 명칭 되었다.

당초 협상일정으로는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Modality)을 수립하고 2003년 9월 멕시코 칸쿠회의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협상 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농업협상 의장인 하빈슨이 제1차 농업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으며 2003년 9월 데르베츠 의장의 제2차 농업협상(안)도 2004년 2월 합의에 실패하였다. 2004년 3월 새로 구성된 의장단은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원국과 주요 협상 그룹간 논의를 거쳐 2004년 8월 기본 골격(framework)에 합의하였다.

2, DDA 농업협상의 최근동향

2004년 8월 기본골격(framework) 합의 이후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세부원칙(Modality)마련에 실패해 오다가 2005년 9월 이후 재개된 농업협상에서 신임 WTO 라미(Lamy) 사무총장과 신임 농업협상그룹 의장으로 팔코너(Falconer)가 선임된 이후 급진전되고 있다. 라미 신임 사무총장은 2005년 12월 개최 예정인 홍콩 각료회의의 협상목표를 당초목표의 2/3수준으로 하향 제시하고 회원국의 분발을 촉구 하였으며 팔코너 의장도 주요 핵심쟁점을 동시에 논의하여 균형을 찾는 협상방식을 제시하여 회원국간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중순, 미

〈표 2〉 2005년 주요 통상 관련 회의 일정

일자	회의	장소	비고
3월 2~4일	소규모 각료회의	케냐	-
3월 18~19일	G20 각료회의	인도	-
5월 2일	G10 각료회의	프랑스 파리	AVE 전환 합의
5월 4일	OECD 각료회의	프랑스 파리	-
6월 2~3일	APEC 각료회의	한국 제주	NAMA 스위스공식 지지
6월 11~12일	G33 각료회의	인도네시아	-
7월 12~13일	소규모 각료회의	중국 대련	G20 농업분야 관세감축공식지지 확산
7월 21~22일	무역협상위원회	스위스 제네바	-
11월 7일	주요 5개국* 각료회의	영국 런던	-
11월 8~9일	주요국 회의	스위스 제네바	사무총장 주재 회의
11월 18~19일	APEC 정상회의	한국 부산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12월 13~18일	제6차 WTO 각료회의	홍콩	-

주: 2005년 9월 이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각분별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음.

국과 EU의 각료급 회동을 시작으로 농업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주요 4개국(QUAD : 미국, EU, 브라질, 인도)과 주요 5개국(FIPs :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각료들의 연이은 회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월을 전후로 핵심 쟁점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이 수치화된 제안으로 나오면서 DDA 농업협상은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수치협상 단계로 진입하였다. 지난 두 달여 본격적인 수치협상을 통하여 농업협상은 상당한 쟁점에 대하여 회원국간 의견 차이를 좁혀왔으나, 관세 감축 폭, 민감품목 등 핵심 쟁점에 관하여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재는 최종 합의단계 문턱에서 멈춰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농업협상 동향과 핵심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주류업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2005년 12월 13일 홍콩 각료회의의 타결 방향과 2006년 협상을 전망해 본다.

3.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농업협상은 브라질·중국·인도 등의 수출개도국 그룹 G-20, 한국·일본·스위스 등의 수입국 그룹 G-10, 미국과 EU의 선진국 그룹 등 4개 그룹이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구도를 보이고 있다. (별첨1)

농업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의 관세감축방식으로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formula)을 채택하고 관세항

목 중 적절한 수의 민감 품목(sensitive products)의 지정을 허용하며, 민감 품목은 품목별로 시장접근물량(TRQ)의 증량과 관세감축의 연계를 통해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도국 우대의 일환으로 개도국에게만 주어진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의 수와 대우도 주요 쟁점사항이다. 이러한 쟁점사항들은 관세구간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적용될 감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경제설정과 감축률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 관세 감축률과 민감품목의 수나 대우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관계 존재한다. 즉 관세가 대폭 감축되면 수입국으로서는 그 만큼 많은 민감 품목의 지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수입국이 원하는 충분한 정도의 민감 품목 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일반품목에 적용될 관세 감축률의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과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관세구간의 경계의 경우 관세구간의 수는 사실상 4개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며, 현재 최상위 관세구간의 경계에서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상위 관세구간의 경계로 미국은 61% 이상, EU는 91% 이상(단 개도국은 131%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G20 76% 이상(단 개도국은 131% 이상), G10은 71% 이상(단 개도국은 100% 이상) ACP는 81%(개도국은 151%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관세감축방식과 감축율에 대해서는 단순선형감축방식(구간내 감축율이 결정되면 동일구간 모든 품목에 동일 감축율 적용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단순선형을 기본으로 하되, 동일한 관세구간에서도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는 점증적 선형감축방식 (progressive linear cut : 동일구간내 에서도 높은 관세율과 낮은 관세율을 차등해서 감축하되 고관세에는 고감축을 저관세에는 저감축을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며 EU는 단순선형을 기본으로 최하위 관세구간에만 제한된 융통성 부여가 필요하며 G20 그룹은 단순선형감축방식 적용을 G10 그룹은 단순선형을 기본으로 개별 관세구간에 제한된 신축성을 주장 하였다.

구간별 관세 감축률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으로 미국은 구간별로 60(55/65)-70(65/75)-80(75/85)-90(85/90)% 감축을 제시하고 개도국 우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EU는 구간별로 35(25~45)-45-55-60%를 제시하

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2/3 수준의 감축률을 제시하였다. G20 그룹은 미국과 EU의 절충안으로 구간별로 45-55-65-75%를 제시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25-30-35-40% 감축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G10 그룹은 단순히 예시하는 차원에서 27-31-37-45% 감축률을 제시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EU그룹과 같은 선진국의 2/3 수준을 제시하였다. ACP 그룹은 25-30-35-42%를 제시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15-20-25-30%의 감축률을 제시하였다.

관세 상한선 적용에 대해서도 4개 그룹(미국, EU, G10, G20)중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G10 그룹과 ACP 그룹이 관세 상한선 설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관세 상한선으로 선진국의 경우 75%를 설정해야 한다

<표3> WTO/DDA 농업협상 주요국 제안내용

	EU		미국	G20	G10	ACP
	10.13제안	10.28 제안				
구간경계	(선진국)30-60-90 (개도국)40-80-120	(선진국)30-60-90 (개도국)30-80-130	20-40-60	(선진국)20-50-75 (개도국)30-80-130	(선진국)20-50-70 (개도국)30-70-100	(선진국)20-50-80 (개도국)50-100-150
관세감축률	(선진국) 20-30-40-50 (개도국) 13.3-20-26.6-33.3	(선진국)35-45-50-60 *최하위(20~45%) (개도국) 25-30-35-40 *최하위(10~40%)	60-70-80-90	(선진국) 45-55-65-75 (개도국) 25-30-35-40	(예시1) 27-31-37-45 (예시2) 32±7-36±8-42±9-50±10	(선진국) 23-30-35-42 (개도국) 15-20-25-30
관세상한	(선진국)100%	(선진국)100% (개도국)150%	(선진국)75% (개도국) X%	(선진국)100% (개도국)150%	반대	반대
민감품목	8%	8%(축소가능) 관세감축은 1/3~2/3 수준	1%	(선진국) 1% (개도국)1.5%	일정 비율 (10~15%)	-
특별품목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한시적 인정	특별품목 지지	-	관세감축 면제 TRQ 증량 면제

고 제시 하였으며 EU와 G20그룹은 선진국의 경우 100%를 개도국의 경우 150%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민감 품목의 수와 대우에 있어서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상당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민감 품목의 수에 있어 미국은 선진국의 경우 전체 농산물 품목 세번의 1%, G20 그룹의 경우 선진국은 전체 세번의 최대 1%, 개도국은 1.5%를 제시 하였으며 EU는 전체 세번의 최대 8%를 제시하면서 최하위 구간 관세감축에 융통성을 허용한다면 4%까지 축소 조정이 가능함을 암시 하였다. G10그룹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10~15% 정도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민감 품목의 대우와 관련하여 미국은 TRQ(Tariff Quotas) 품목과 非TRQ 품목을 구분하여 TRQ 품목일 경우 쿼터 초과 관세는 일반 관세 감축률의 50%를 적용하고, 쿼터내 관세는 철폐하되 TRQ 증량은 국내소비의 7.5%를 제안 하였으며 非TRQ 품목일 경우는 첫째 일반 관세감축을 따르되 이행기간 동안만 SSG(Special Spfeguard) 적용하거나, 둘째 일반 관세 감축을 따르되 긴 이행기간을 부여 하는 방안과 셋째 일반 관세감축을 따르되 이행초기에는 낮은 감축을 적용하고 이행말기에는 큰 폭 감축(back-loading)을 적용하는 방안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G20 그룹은 민감 품목(TRQ 품목 내에서)의 관세 감축은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률의 최소 70%이상을 적용하고 TRQ 증량은 기준기간 국내 소비량의 최소 6.0%를 설정한 후 관세 감축 편차를 감안하여 확대하고 민감 품목에도 관세 상한선 적용을 제안하였다.

EU는 민감 품목의 관세감축은 일반 관세 감축률의 1/3~2/3 수준을 제시하고 TRQ 증량은 일반 관세 감축률과의 차이 및 기존 관세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양허수준의 대비 최대 16~32%를 증량을 제안 하였다.

개도국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가 최근 들어 기본골격에서 제시된 3가지 기준(식량안보, 생계보전, 농촌개발)에 기초한 적합한 지표(indicator)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별품목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특별품목의 대우에 대해서 G33이 TRQ 증량 및 신설을 면제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 선진국과 수출개도국들은 특별품목이라도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 향후 전망 및 우리나라의 쟁점별 대응전략

2005년 9월 이후 최근까지의 주요국과 협상그룹의 제안내용에서 확인 되었듯이 주요 쟁점별 입장차이가 현저한 상태로 WTO 협상방식인 일괄타결 원칙을 감안할 때 2005년 12월 13일에서 18일까지 개최되는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모든 쟁점에 대한 사실상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WTO 회원국 간에는 2003년도 멕시코 간군 각료회의 결렬 에 이어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 까지 결렬된다면 지금까지 협상실적마저도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회원국 간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라미 사무총장의 제안과 같이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를 완벽한 세부원칙의 타결 보다 한 단계 낮은

중간단계로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타결을 시도할 것이며 만약 협상타결에 실패 하여도 이는 완전결렬이 아니라 최종 절충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표현한 것 일뿐 관세 감축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상태에서 이미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협상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UR 수준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도 부터 회원국들이 협상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6년도 말 까지는 협상타결을 하여야 한다. 특히 여타 회원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증진권한(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 즉 신속처리절차 만료시점이 2007년 6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2006년 말까지 DDA협상을 종결하고 2007년 상반기에 미 의회 비준을 받는 일정을 갖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주요한 국가도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의 DDA 농업협상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힘의 균형이 바뀌어 과거 UR의 다자간 무역협상과 달리 미국과 EU 양자간 절충으로 최종 합의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개도국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쟁점사안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이해 당사자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관세감축율의 경우 미국 등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의 과도한 관세감축 요구가 채택되지 않도록 G10그룹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EU의 관세감축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타결 되도록 협상하되 불가피할 경우는 민감품목,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와 연계하여 우리의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요농산물이 민감품목에 포함되고 TRQ 증가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TRQ 증량기준으로는 과거 UR 협상시 적용했던 양허기준을 주장하되 협상동향을 감안 최근소비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다는 제안에 대한 여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관세 상한선 설정에 있어 최근에는 미국과 G20 그룹은 물론 EU 까지도 관세 상한선 설정에 찬성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G10그룹과 소규모의 ACP그룹 만이 사실상 관세 상한선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협상동향을 살펴보면 관세 상한선 설정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G10 그룹과 공조를 통해 관세 상한선 설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ACP그룹을 비롯한 여타국가등 관세 상한선 반대 세력 규합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5.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WTO/DDA 농업협상에서 주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기 때문에 분류상 농산물품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산품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이 200%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류부문의 관세율은 맥주, 소주, 위스키등 대부분의 주류가 20%에서 30%수준으로 공산품의 관세율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기는 하지만 농산물의 관세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 된다.

금번 WTO/DDA 농업협상에서는 지난 UR 협상에서의 실질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고관세율에는 고감축을 저관세율에는 저감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 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류부문의 관세율이 최고 30%인 점을 감안한다면 WTO/DDA 농업협상에 따른 주류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서민 대중주인 소주의 경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중에서 세 번상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이 지난 UR 협상시 2004년도의 최종 실행세율을 270%, 시장접근물량(TRQ)은 10,333kl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WTO/DDA 농업협상이 타결된다면 협상결과에 따라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양허세율의 인하율과 시장접근물량의 증가량이 결정된다. 즉 우리나라가 개도국 또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개방수준이 결정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되느냐 또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서도 개방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류제조용 발효

주정의 개방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주정업계에서 정부의 주정원료 수급계획에 따라 정책원료로 고가의 국내산 농산물인 쌀보리, 겉보리, 고구마등 매년 600억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WTO/DDA 농업협상 결과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이 큰 폭으로 개방된다면 국내 주정업계는 외국산 주정과외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주정업계로서도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득이 더 이상 고가의 국내산 농산물 사용이 불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주정업계에서 매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국내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용 발효주정의 양허세율이 최소한 150% 이상 유지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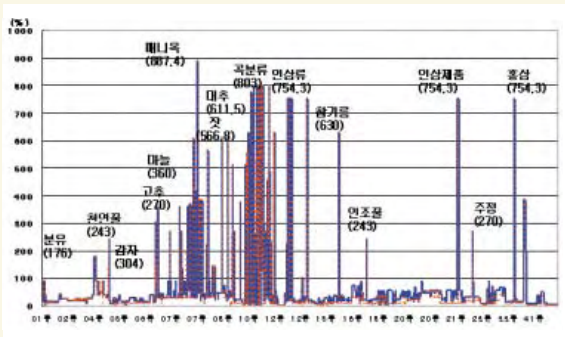
그동안 당 협회에서는 WTO/DDA 농업 협상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협상 당사국들의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주류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정업계 대표자에게 보고 하였으며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WTO/DDA 농업 협상시 제시되는 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참고 1〉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분포

양허세율 평균 : 63.2

실행세율평균 : 54.2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 구조

양허관세	품목수	품목예시
500%이상	46	매니옥, 곡분류, 참깨, 인삼류, 맥주보리 등
200~499%	78	대두, 전분, 고구마, 감자, 마늘, 고추, 밤 등
100~199	18	분유, 감귤, 양파, 보리분, 사료용근채류 등
50~99	189	오렌지, 과일혼합즙스, 면류, 당면, 고추장 등
40~49	132	과일류 쇠고기, 버섯류 수박, 오이, 당근 등
30~39	147	치즈, 주류, 유제품, 과일음료 등
20~29	249	닭고기, 냉동채소류, 돼지고기, 식용유 등
10~19	381	곡물조제품, 물, 과당, 포도당, 과수모목 등
0.1~9.9	183	섬유원료, 원피,모피, 밀, 당밀류 등
0	29	종자류, 가축정액 등
미양허	16	쌀 관련 품목
계	1,452	

〈참고 2〉 DDA 농업협상 주요 그룹 현황

구분	대상국가	기본입장	비고
MF6	한국, EC,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MF : Multi-functionality (다원적—기능) NTC : Non Trade Concerns (비교역적—관심사항)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농업의 NTC 주장) 관세감축에 있어 UR방식 선호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 주장
G-5	미국, EC, 호주, 브라질, 인도		농업협상주요국그룹
G-10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농산물 수입국 입장 대변 관세상한 설정 반대 관세감축에 있어 신축성 주장	수입국 그룹
케언즈 그룹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농산물 수출국 입장 대변	수출국 그룹
G-20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중국,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공, 태국,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입장 대변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수출보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	강경 개도국그룹
G-33	한국, 중국, 도미니카,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마다가스칼,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터키,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	개도국 입장 반영 SP 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수입 제한제도(SSM)에 중점	특별품목 그룹
G-90	ACP, LDC, 아프리카그룹 국가들로 구성 모리셔스, 남아공, 이집트 등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국가 포함	
ACP그룹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77개 국가	로메협약에 의해 EC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참고문헌〉

강문성 2005 WTO/DDA 협상의 논의동향 및 향후 전망. WTO/DDA 제4차
민관합동 포럼.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 2004a. 『DDA협상의 본격적인 재개 가능성에 대한 평가』. KIEP 세계
경제 2004년 7월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 2004b. 『DDA협상분야별 쟁점 및 평가와 우리의 통상정책방향』. 서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나수업 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노재봉·이종화 2002.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성·박순찬·이창수 2003.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정경제부 2003. 『WTO DDA 중간점검: 도하에서 칸쿤까지 분야별 논의결
과』. 서울: 재정경제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2.
『WTO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관한 평가와 협상대책』
농림부 국제농업국 2003. 6. 『WTO DDA 농업 Modality 초안자료』
서해동 WTO/DDA 협상 동향과 대책- WTO/DDA 제4차 민관합동포럼. 농림
부 농업협상과장
서진교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WTO/DDA 제4차 민관합동포
럼.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낙규 외 2002. 『DDA협상 총점검 - 2002』.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규 외 2003. 『DDA 중간점검 - 2003』.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 (2005), "APEC MRT Statement on the DDA Negotiations,"
2005/MRT/005.
Kang, Moonsung (2005), "Formulas for Industrial Tariff Redu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UN ESCAP Policy Brief No.5.
WTO 2004.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Geneva: WTO.